

# 산학협력위원회 운영규정

전문개정 2020.10.26. 개정 2022.03.04. 개정 2023.02.20.

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해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이라 한다)의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및 가족회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산학협력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.

## 제3조(주관부서)

산학협력 및 가족회사에 관한 사항의 원활한 관리,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센터에 산학협력위원회 두고, 해당 계열(전공) 및 (학)과에는 산학협력소위원회(이하“소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 
<개정 2022.03.04.>

## 제4조 (조직 및 구성) 본교는 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직원이 한다.
- ③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필요시 외부 산업체 인사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 산하에는 해당 계열(전공) 및 (학)과 소위원회를 둔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5조 (위원의 임무) 위원 및 위원회의 임무는 각 각호와 같다.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.
- ③ 위원회는 제7조의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
## 제6조 (산업체위원 추천기준) 산업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산업체 재직 중인 자로 한다.

- ① 해당학과 전공 관련 기관
- ② 교원 및 학생현장연수 산업체
- ③ 학생 취업 관련 산업체
- ④ 산·학·연 컨소시엄 참여업체
- ⑤ 기타 산·학협력이 원활한 산업체

## 제7조 (위원회의 심의사항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
- ① 산·학·연·관과의 산학협력 및 가족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② 가족회사 등급적용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02.20.>
- ③ 직무분석 및 직무능력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개발
- ④ 직무능력완성도에 관한사항
- ⑤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
- ⑥ 교수·학생 현장연수 및 실습지도
- ⑦ 산업체 인사의 대학교육 참여(겸임교수)
- ⑧ 산·학간의 정보교환 및 취업지도
- ⑨ 협력기관간 학습시설의 공공활용
- ⑩ 산학협력기금확보(장학금·연구비·기타)
- ⑪ 계열(전공) 및 (학)과 소위원회의 상정 안건
- ⑫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

#### 제8조 (회의)

- ①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 개최한다.
- ②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개최일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제9조 (협의사항 통보)

- ①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에서는 계열(전공) 및 (학)과에 관한 의결사항에 대하여서는 소위원회에 통보한다.

#### 제10조 (소위원회 구성)

- ① 소위원회는 해당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당연직으로 하고, 산업체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산업체 인사의 위촉은 소위원장의 추천과 위원장(주관부서장)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열(전공) 및 (학)과장이 당연직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산업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간사는 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계열(전공) 및 (학)과 위원장이 위촉한다.

#### 제11조 (소위원회 임무)

-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회의를 소집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.

제12조 (소위원회 보고) 소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, 주관부서장(위원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정보보호) 산학협력센터 및 해당 계열(전공) 및 (학)과에서는 산학협력 및 가족회사와 관련된

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.  
<개정 2022.03.04.>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 
이 규정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 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02.20.)

제1조 (시행일)  
이 규정은 2023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